

##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8일

파 주 시 장

###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2. 제정이유

-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목적(안 제1조)
- 나.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
- 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관련 사항(안 제3조 ~ 안 제11조)

### 4. 개정조례안: 별첨

개정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란에 게시

### 5. 의견제출

- 가. 제출기일 : 2019년 9월 17일까지(20일간)
-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
-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의회법무과(우 10932)
  - 전화 : 031-940-4171 / FAX 031-940-4099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건	비 고